

참고 1 심의 및 의결 안건

□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된 안건

《 주요 검토 내용 요약 》

○ 평가계획

❖ (‘20년 평가계획 및 방법)

- 평가대상 및 기간
- 평가반 구성 및 운영 방법
- 평가 실시 시기
-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법

○ 평가기준 세부항목

❖ ‘20년 평가기준 세부 항목 및 배점 확정

- 문항 신설(5문항) 및 폐지(1문항)
- 배점 조정 (상향 : 10, 하향 : 7)

❖ ‘21년 평가지표 검토

- 상태보고서 전산입력 제도 평가
- 현장 모니터링 제도 도입

❖ (자체평가 제도 도입)

- ‘20년 평가 시범 실시 후 ‘21년부터 전면 도입

❖ (지도사 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 지도사 기관에서 요구하는 7개 문항에 대한 검토

◆ (안전1) 세부평가계획 검토

□ '20년 세부평가계획 검토

○ 세부 평가계획에 따른 전반적 사업 추진방향의 적정성 검토

- 평가 실무위원회('20.2.13., 울산 본부)
- 평가 운영위원회('20.2.21., 대전역)
- 평가계획 공고('20.2.26., 홈페이지 공고)
- 평가설명회(3월초 2개 권역으로 나누어 3회 개최)
- 평가반 구성 및 사전워크숍('20.2.28., 인천광역본부)
- 평가실시('20.3.15.~4월 말)
- 중간 점검회의 개최(4월 중, 인천광역본부)
- 평가 실무위원회(2차)(6월 중)
- 평가 운영위원회(2차)(6월 말)
- 최종 평가 결과 통보 및 보고·공개(9월~10월 말)

☞ (검토안)

- '20년 안전관리전문기관 세부평가계획(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등급 등)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평가 실시 시, 위험지역 배제, 청정 지역 우선 심사, 자체평가 활용 등 필요인력 최소화 방안 검토
- 설명회·평가 시, 유증상자 참여 배제, 기관별 참석인원 최소화 하여 실시

◆ (안건1) 세부평가계획 검토

□ 검토 결과

- (평가대상)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안전관리전문기관(117개소)에 대해 평가
- (평가기간) 2020.3.15. ~ 4월 말(약 40일 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명회, 회의, 평가 일정 가변적 운영

심의결과

[수정동의]

설명회, 회의 등 일정 연기, 취소 등 평가 운영일정 변경 심의 의결

◆ (안전2) '20년 평가기준 및 배점검토

□ '20년 평가 기준 및 배점 확정

- (문항 지표) 가점 지표 5개 문항 신설 및 1개 문항 폐지
 - (20년 신설) 고급인력 확보 실적, 소속기관에 장기 근속,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정부정책 반영 노력(비정형 작업 예방 지도, 끼임재해 감소 성과)
 - A.2.2 : 고급인력 확보 노력도(가점 +10점)
 - A.2.3 : 수행인력의 근속기간 수준의 적정성(가점 +10점)
 - A.3.4 : 홈페이지 등 온라인 서비스 구축(가점 +10점)
 - B.5.3 : 비정형작업 예방지도 노력도(가점 +10점)
 - B.5.4 : 끼임재해 감소성과(가점 +10점)
 - (20년 폐지) 업무상 중상해 재해자 감소성과
 - B.6.1 : 업무상 중상해 재해자 감소성과(가점 +20점)
- (배점 조정) '19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적 평가 배점 보정

☞ (검토안)

A. 운영체계 평가항목				B. 업무성과 평가항목			
변경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전년대비)	변경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전년대비)
합 계			1,000	합 계			1,000
소 계			400	소 계			600
상황	A.1.1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10)	상황	B.1.1	수행인력 사업장 배분의 적정성(규모)	40(↑ 10)
	A.1.2	운영규정(매뉴얼) 수립·실행의 적정성	20(↑ 10)		B.1.2	수행인력 사업장 배분의 적정성(사업장수)	40
	A.2.4	수행 인력의 정규직화 노력도	40(↑ 10)		B.1.5	전 공정설비별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40
	A.2.5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50(↑ 20)		B.1.9	장비 활용의 적정성	50
	A.2.6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50(↑ 20)		B.2.1	업무상 재해율 감소 성과	30
	A.3.1	장비의 유지·관리의 적정성	40(↑ 10)		B.2.2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성과	70
	A.5.1	포상실적	+20(↑ 10)		B.2.3	위탁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감점-100
	A.5.2	업무정지 처분	-90(↑ 10)		B.4.1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활동 실적	100
	A.5.3	시정조치·경고 처분	-50(↑ 30)		B.1.4	상태보고서 서명 및 전달의 적정성	10(↓ 20)
동일	A.1.3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20	하향	B.1.6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의 적정성	40(↓ 30)
	A.3.2	보유 장비의 사용 속지상태	40		B.1.7	위험성평가 인정실적(인정률)	50(↓ 20)
	A.4.1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10		B.1.8	안전관리 기술자료 제공 실적	40(↓ 20)
하향	A.2.1	수행인력 추가 확보 실적	50(↓ 10)		B.3.1	위탁사업장 안전관리 만족도	50(↓ 50)
	A.2.2	고급인력 확보 실적	가점+10(-)		B.5.6	감독기관 신고와 연계	+30(↓ 20)
	A.2.3	수행 인력의 근속기간 수준의 적정성	가점+10(-)	신설	B.5.3	비정형작업 및 끼임재해 예방 지도 실적	가점 +20
신설	A.3.4	홈페이지 등 온라인 서비스 구축	가점+10(-)		B.5.4	끼임재해 감소성과	가점 +10
					B.5.1	화재예방 작성 서식의 적정성 (가점→배점)	5
폐지		없음			B.5.2	화재예방 활동 실적(가점→배점)	5
-	A.2.7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도(가점→배점)	20	폐지	B.6.1	업무상 중상해 재해자 감소성과	+20

◆ (안건2) '20년 평가기준 및 배점검토

□ 검토 결과

- 항목 B.5.3. “비정형작업 예방지도 실적” → “끼임재해 및 비정형작업 예방지도 실적” 변경하여 끼임재해 감소를 위한 예방지도 실적 평가기준 추가 및 배점 확대(+10점 → +20점)

[수정동의]

심의결과

항목 B.5.3. 지표에 끼임재해 예방지도 실적 추가 및 배점 확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 (안전3) '21년 평가지표 검토

□ (평가지표 신설)

- 상태보고서 전산입력에 따른 평가방법 결정
 - '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20조」 상태보고서를 K2B 전산 입력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다음달 10일내에 전산입력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
 - 시행초기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하여 법 시행일부터 평가 대상 업무 기간으로 산정은 불합리하여 대상 업무기간을 별도로 정해야함
- 위탁사업장 모니터링 제도 실시
 - K2B 등록자료와 현장 평가시 상태보고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상태보고서의 신뢰성 및 질 향상 유도
 - 위탁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작동성 확인 필요

◆ (안전3) '21년 평가지표 검토

☞ (검토안)

- 상태보고서 전산입력에 따른 평가방법 결정
 - 평가 대상 업무기간(①20.1.1.~, ②20.7.1.(하반기)~, ③그 외 등)
 - 평가방향(가·감점, 입력지연율(건수), 누락 사업장 처리방안) 논의

○ 위탁사업장 모니터링 제도 실시

- ㉠ 위탁사업장의 재해발생 건수 관련 개선이 미흡 또는 미개선하였을 경우
-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와 현장이 불일치할 경우
- ㉢ 사업장관리카드의 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할 경우

- 현장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 사업장 내 범위반사항 발견 시 처리 절차 논의

□ 검토 결과

- 상태보고서 전산입력에 따른 평가방법 결정
 - K2B 전산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해 법 시행일(20.1.1.)부터 평가 대상 업무 기간으로 산정은 불합리하므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하여 전산 안정화 시기 파악 후, 평가 운영위원회(2차)에서 평가 대상 업무 기간 및 평가방법 구체화 예정
 - 누락 사업장 확인되는 경우 관할 노동관서 보고
 - 입력지연(건수)에 따른 차등감점 방식에서 입력지연 유무에 따른 감점 방식으로 변경
- 위탁사업장 모니터링 제도 실시
 - 사업장 내 범위반사항 발견 시, 관할 노동관서 보고

[수정동의]

심의결과

21년 평가지표 신설항목에 대해

- (B.5.7.) 평가대상 업무 기간은 K2B전산 안정화 시기 모니터링 후 확정
- (B.3.2.) 현장모니터링 제도 실시 중 사업장 내 범위반사항 발견 시, 관할 노동관서 보고

◆ (안건4) 자체평가 제도 도입

□ 자체평가 제도 도입

- 자율적 자체 평가를 유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평가결과에 대해 기관에서 이의신청하거나 결과에 대한 불만 최소화
- 자체 평가를 통해 기관의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유도

☞ (검토안)

- 자체평가 시행 시기 및 범위
 - '20년 시범운영 후, '21년 자체평가 시 가점부여
 - 기관 수용도 파악하기 위해 설명회 등 다양한 창구로 의견수렴 필요
- 자체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처리 방안
 - 자체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감점 부여 방식
 - 자체평가 결과 및 기관평가 결과 매칭율이 높은 경우(예:편차 5점 이내 등) 가점 부여 방식으로 자체평가 충실도 제고 유도

□ 검토 결과

- 자체평가 시행 시기 및 다른 평가방법 결정
 - '20년 자체평가 자율적 시범운영 후, '21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체평가 결과와 기관평가 결과 부합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심의결과

[수정동의]

'20년 시범운영 후, '21년도 자율운영하되 자체평가 충실도에 따라 가점부여 방식 운영

◆ (안전5) 지도사 기관 평가방법

□ 지도사 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검토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에서 1인 전문가로 활동하는 지도사 기관 평가 시, 일반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동일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받아 평가지표 개선검토의견 표출
- 지도사 기관 요구 평가지표 7건
 - (A.2.2.1) 전문인력추가 확보(-60점)
 - (A.2.2.2) 수행요원 내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30점)
 - (A.2.2.3) 수행요원 외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30점)
 - (A.2.2.4) 대행인력 사업장 배분(100인/규모기준) 형평성(-30점)
 - (A.2.2.5) 대행인력 사업장 배분(사업장 수) 형평성(-40점)
 - (A.2.2.6) 고용안정 노력도(-30점)
 - (A.6.1) 수행요원 전문성 향상 지원실적(가점 : 0~20점)
- '19년 평가 결과 지도사 기관(11개소) 평균점수는 625.4점으로 전체기관 평균점수(749.8점)보다 124.4점 낮으나, 전년대비(527.4점) 98점 상향평가됨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지도사	전체평균
	1,000	625	750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60	0	8
2.2 수행요원 내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30	14	28
2.3 수행요원 외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30	11	24
2.4 대행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규모기준)	30	30	30
2.5 대행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사업장수 기준)	40	40	27
2.6 고용안정 노력도	30	0	27
6.1 수행요원 전문성 향상 지원실적	0~20	2	3

◆ (안전5) 지도사 기관 평가방법

[첨부] 지도사 기관 평가 항목별 점수표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지도사 점수	평균
합 계				1,000	625	750
A 운영체계 (400)	소 계			400	215	303
	A.1	운영관리체계 (60)	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30	21	26
			1.2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20	18	18
			1.3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10	0	2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220)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60	0	8
			2.2 수행요원 내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30	14	28
			2.3 수행요원 외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30	11	24
			2.4 대행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규모기준)	30	30	30
			2.5 대행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사업장수 기준)	40	40	27
			2.6 고용안정 노력도	30	0	27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20)	3.1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40	35	36
			3.2 유지·관리의 적정성	30	16	22
			3.3 법정장비 및 추가 장비 활용 실적	50	27	41
	가 감 점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평가년도 포상실적	0~10	0	0
			4.2 평가년도 업무정지 처분실적	0~80	0	-1
			4.3 평가년도 시정조치·경고 처분실적	0~20	-1	-1
		A.5 추가 장비 확보 노력도	5.1 추가 장비 확보 노력도	0~20	2	12
			A.6 수행요원 전문성 향상실적	6.1 수행요원 전문성 향상 지원실적	0~20	2
		소 계			600	410
B 업무성과 (600)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300)	1.1 사업장 관리카드 관리의 적정성	30	23	20
			1.2 상태보고서 서명 및 전달의 적정성	30	28	26
			1.3 공정별 설비·장비에 대한 보고서의 적정성	40	35	31
			1.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70	65	54
			1.5 위탁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자료 제공	60	35	53
			1.6 위험성평가 인정실적(인정률)	70	17	34
	B.2	재해감소 (100)	2.1 업무상 재해를 감소 성과	30	12	2
			2.2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을 감소성과	70	70	61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200)	3.1 위탁사업장 안전관리 만족도	100	97	95
			3.2 위탁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100	11	65
	가 감 점	B.4 재해발생 및 감독기관 연계	4.1 감독기관 신고와 연계	0~50	0	1
			4.2 위탁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0~100	0	-6
			4.3 위탁사업장의 산재은폐	0~100	0	-2
		B.5 화재예방 노력도	5.1 화재예방 노력도	0~10	4	4
			B.6 업무상 중상해 재해자 감소성과	6.1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자 감소성과	0~20	15

◆ (안전5) 지도사 기관 평가방법

☞ (검토 1안)

○ 평가지표 신설

- 기관 규모별 평가지표 그룹화하여 (A)일반 안전관리전문기관, (B) 중소규모 안전관리전문기관, (C)지도사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나누어 평가 실시

☞ (검토 2안)

○ 평가지표 유지

- 현 평가지표에서 지도사 기관에 해당없는 평가항목은 비적용하여 1,000점 만점으로 변환 점수 부여
- 현 평가지표에서 지도사 기관에 해당없는 평가항목은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를 부여

□ 검토 결과

○ 지도사 기관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 공감

○ 7개 항목 검토 결과,

- 항목 (2.4)대행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규모별), (2.5)대행인력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사업장수 기준) 등은 기존 지표 적용 방식 유지
- 항목 (2.1)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2.6)고용안전 노력도는 기관 특성 상 비해당사항이므로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 부여

○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

심의결과

[수정 동의]

지도사 기관 평가 시, 항목(2.1, 2.6)에 대해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 부여

◆ (안건6) 만족도 조사 평가 방법

□ 최소 응답자수 이하 조사기관에 대한 처리방안 필요

- '19년 만족도 조사결과 14개 기관에서 최소 응답자 수(20개소) 미만으로 조사됨
-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을 받은 기관 4개 기관이 최소 응답자 수 미만 응답 기관임

☞ (검토안)

- 최소 응답자수 미만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최소 응답자수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소 응답자수 미만으로 응답 기관에 대한 점수 부여 방법 논의

□ 검토 결과

- 최소 응답자수 이하 기관은 전체 만족도 조사 평균값의 ± 10 점 부여
 - 최소 응답자수 이하 기관에서 만족도 조사 결과 받은 점수가 평균보다 높을(낮을) 경우 평균값의 $+10$ 점(-10 점) 부여방식 등을 적용하여 차등평가

[수정 동의]

심의결과

만족도 조사 최소 응답자수 이하 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평균값을 기준으로 차등 평가

참고 2

20년 안전관리전문기관 세부평가 항목 배점 비교표(안)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문항수		'19년	'20년
				'19년	'20년		
합 계				45	48	1,000	1,000
A 운영 체계	소 계			17	18	400	400
	A.1	운영관리체계	1.1 운영규정(매뉴얼) 수립의 적정성	1	1	30	+20~-5
			1.2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	1	30	+20~-5
			1.3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1	1	20	+20~-5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2.1 수행인력 추가 확보 실적	1	1	60	50
			2.2 고급인력 확보 실적	-	1	-	10
			2.3 수행 인력의 근속기간 수준의 적정성	-	1	-	10
			2.4 수행 인력의 정규직화 노력도	1	1	30	40
			2.5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1	1	30	50
			2.6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1	1	30	50
			2.7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도	1	1	20	2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3.1 보유장비의 유지·관리의 적정성	1	1	30	40
			3.2 보유 장비의 사용 숙지상태	1	1	40	40
			3.3 추가장비 확보 실적	1	1	20	40
			3.4 홈페이지 등 온라인 서비스 구축	1	1	-	10
	가감점 항목	A.4 종합기술 지원체계 구축	4.1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1	1	10	10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5.1 평가년도 포상실적	1	1	10	20
			5.2 평가년도 업무정지 처분	1	1	-80	-30~-90
	5.3 평가년도 시정조치·경고 처분		1	1	-20	-5~-50	
	B 업 무 성 과	소 계			15	20	600
B.1		사업장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1.1 수행인력 사업장 배분의 적정성(규모)	1	1	30	40
			1.2 수행인력 사업장 배분의 적정성(사업장수)	1	1	40	40
			1.3 사업장 관리카드의 적정성	1	1	30	30
			1.4 상태보고서 서명 및 전달의 적정성	1	1	30	10
			1.5 전 공정·설비별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1	1	40	40
			1.6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의 적정성	1	1	70	40
			1.7 위험성평가 인정실적(인정률)	1	1	70	50
			1.8 안전관리 기술자료 제공 실적	1	1	60	40
			1.9 장비 활용의 적정성	1	1	50	50
B.2		재해감소 성과	2.1 업무상 재해율 감소 성과	1	1	30	30
			2.2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성과	1	1	70	70
			2.3 위탁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1	1	30	30
B.3		위탁사업장 안전관리 만족도	3.1 위탁사업장 안전관리 만족도	1	1	100	+50~-20
B.4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4.1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활동 실적	1	1	100	100
B.5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5.1 화재예방 활동 작성 서식의 적정성	1	1	10	5
			5.2 화재예방 활동 실적	-	1	-	5
			5.3 비정형작업 및 끼임재해 예방지도 실적	1	1	-	20
			5.4 끼임재해 감소성과	1	1	-	10
			5.5 위탁사업장 산재은폐	1	1	-100	-100
	5.6 감독기관 신고와 연계		1	1	50	+30	